

##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국제도시 내 A-42BL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85㎡이하 공공분양주택 930세대

-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건분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032-751-880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람 예약자, 당첨자(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체결시)에 한하여 건분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및 공급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날짜 및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슬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분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 신청인 외 1인, 총 2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건분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분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건분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분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알 려 드 린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387**이며, 공고문은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홈페이지(<http://yj-seohan.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분주택 내방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사이버 건분주택(<http://yj-seoha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계속하여 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4)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국민주택(전용 85㎡이하주택))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6년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거주 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사업 주체는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거주무 부기등기 및 거주실태조사

- 본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상기 거주무기간(이하 "거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무자가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표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해당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해당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해당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당첨자 계약체결                  |
|----|---|---------------|----------------|-------------------------------|--|--------------------------|---------------------------|
| 일정 | 2021.06.07.(월)  | 2021.06.08(화) | 2021.06.09.(수) | 2021.06.17.(목)                | 2021.06.18.(금) ~ 06.27(일)  | 2021.06.29(화) ~ 07.06(화) | 2021.07.30.(금) ~ 08.03(화) |
| 방법 | 인터넷 청약<br>(08:00~17:30)   |               |                | 개별조회<br>(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건본주택 내방 접수<br>(10:00~16:00)  |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li> <li>※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3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li> </ul> |                          |                           |
| 비고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코로나로 인하여 은행간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해당 은행에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3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건본주택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위임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0년 9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0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br><b>-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b> | <b>10년간</b>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국제도시 A-42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또는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에 주의)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부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A-42BL : 공공분양주택 지하2층~29층 9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930세대 (일반공급 160세대, 특별공급 770세대)

### 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br>관리번호    | 주택형       | 주택<br>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 세대별<br>대지지분<br>(㎡) | 공급세대수           |    |          |          |     |           |          | 최고<br>층수 | 최하층<br>우선<br>배정<br>세대수 | 입주<br>예정<br>시기 |          |  |
|-------|---------------|-----------|----------|-------------|----------|----------|-----------|------------|----------|--------------------|-----------------|----|----------|----------|-----|-----------|----------|----------|------------------------|----------------|----------|--|
|       |               |           |          | 공급면적        |          |          | 그 밖의 공용면적 |            |          |                    | 계약<br>면적<br>(계) | 계  | 특별공급     |          |     |           |          |          |                        |                | 일반<br>공급 |  |
|       |               |           |          | 주거<br>전용    | 주거<br>공용 | 소계       | 기타<br>공용  | 지 하<br>주차장 | 다자녀      |                    |                 |    | 신혼<br>부부 | 생애<br>최초 | 노부모 | 국가<br>유공자 | 기관<br>추천 |          |                        |                |          |  |
| 합 계   |               |           |          | 930         | 90       | 275      | 229       | 43         | 43       | 90                 | 160             | 29 | 36       |          |     |           |          |          |                        |                |          |  |
| A42BL | 2021000387-01 | 064.7600A | 64A      | 64.7600     | 22.4598  | 87.2198  | 4.6502    | 34.1175    | 125.9875 | 44.4515            | 186             | 18 | 55       | 46       | 9   | 9         | 18       | 31       | 25                     | 8              |          |  |
|       | 2021000387-02 | 074.9600A | 74A      | 74.9600     | 25.7243  | 100.6843 | 5.3827    | 39.4912    | 145.5582 | 51.3137            | 163             | 16 | 48       | 40       | 8   | 8         | 16       | 27       | 29                     | 6              |          |  |
|       | 2021000387-03 | 084.9300A | 84A      | 84.9300     | 28.7591  | 113.6891 | 6.0987    | 44.7437    | 164.5315 | 57.9416            | 110             | 11 | 33       | 27       | 5   | 5         | 11       | 18       | 29                     | 4              |          |  |
|       | 2021000387-04 | 084.9300B | 84B      | 84.9300     | 28.6091  | 113.5391 | 6.0987    | 44.7437    | 164.3815 | 57.8651            | 235             | 23 | 70       | 58       | 11  | 11        | 23       | 39       | 29                     | 9              |          |  |
|       | 2021000387-05 | 084.9100C | 84C      | 84.9100     | 28.7639  | 113.6739 | 6.0972    | 44.7332    | 164.5043 | 57.9338            | 95              | 9  | 28       | 23       | 4   | 4         | 9        | 18       | 25                     | 4              |          |  |
|       | 2021000387-06 | 084.9100D | 84D      | 84.9100     | 28.7439  | 113.6539 | 6.0972    | 44.7332    | 164.4843 | 57.9236            | 85              | 8  | 25       | 21       | 4   | 4         | 8        | 15       | 29                     | 3              |          |  |
|       | 2021000387-07 | 084.9100E | 84E      | 84.9100     | 28.7239  | 113.6339 | 6.0972    | 44.7332    | 164.4643 | 57.9134            | 56              | 5  | 16       | 14       | 2   | 2         | 5        | 12       | 29                     | 2              |          |  |

#### ■ 주택형 표시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br>(청약시 주택형) | 064.7600A | 074.9600A | 084.9300A | 084.9300B | 084.9100C | 084.9100D | 084.9100E |
|---------------------------|-----------|-----------|-----------|-----------|-----------|-----------|-----------|
| 주택 타입                     | 64A       | 74A       | 84A       | 84B       | 84C       | 84D       | 84E       |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주)서한,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영종국제도시 A-42BL,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서한,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시공: (주)서한,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 ※ 본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주)서한 컨소시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분양 및 하자 등의 업무는 (주)서한컨소시엄의 업무입니다.
- ※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과 주택타입은 사업승인 도서상과 표현방법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금액

[단위 : 원]

| 주택형       | 주택타입 | 층별     | 세대수 | 주택가격        | 계약금<br>(10%) | 중도금          |              |              |              |              |              | 잔금(30%)      |            |            |
|-----------|------|--------|-----|-------------|--------------|--------------|--------------|--------------|--------------|--------------|--------------|--------------|------------|------------|
|           |      |        |     |             |              | 1회차<br>(10%) | 2회차<br>(10%) | 3회차<br>(10%) | 4회차<br>(10%) | 5회차<br>(10%) | 6회차<br>(10%) | 융자금<br>제외 금액 | 주택도시기금     |            |
|           |      |        |     |             |              | 계약시          | 2021-11-29   | 2022-04-28   | 2022-09-28   | 2023-02-28   | 2023-06-28   | 2023-11-28   | 입주시        |            |
| 064.7600A | 64A  | 1~5층   | 36  | 280,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9,000,000  | 75,000,000 |
|           |      | 6~10층  | 40  | 283,0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9,900,000  | 75,000,000 |
|           |      | 11~15층 | 40  | 286,0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10,800,000 | 75,000,000 |
|           |      | 16~20층 | 40  | 289,0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11,700,000 | 75,000,000 |
|           |      | 21~25층 | 30  | 292,0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12,600,000 | 75,000,000 |
| 074.9600A | 74A  | 1~5층   | 27  | 322,0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21,600,000 | 75,000,000 |
|           |      | 6~10층  | 30  | 325,0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22,500,000 | 75,000,000 |
|           |      | 11~15층 | 30  | 328,0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23,400,000 | 75,000,000 |
|           |      | 16~20층 | 30  | 331,0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24,300,000 | 75,000,000 |
|           |      | 21~25층 | 30  | 334,0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25,200,000 | 75,000,000 |
| 084.9300A | 84A  | 26~29층 | 16  | 337,0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33,700,000   | 26,100,000 | 75,000,000 |
|           |      | 1~5층   | 18  | 364,0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4,200,000 | 75,000,000 |
|           |      | 6~10층  | 20  | 367,0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5,100,000 | 75,000,000 |
|           |      | 11~15층 | 20  | 370,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6,000,000 | 75,000,000 |
|           |      | 16~20층 | 20  | 373,0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6,900,000 | 75,000,000 |
| 084.9300B | 84B  | 21~25층 | 20  | 376,0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800,000 | 75,000,000 |
|           |      | 26~29층 | 12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8,700,000 | 75,000,000 |
|           |      | 1~5층   | 44  | 364,0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4,200,000 | 75,000,000 |
|           |      | 6~10층  | 45  | 367,0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5,100,000 | 75,000,000 |
|           |      | 11~15층 | 45  | 370,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6,000,000 | 75,000,000 |
| 084.9100C | 84C  | 16~20층 | 45  | 373,0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6,900,000 | 75,000,000 |
|           |      | 21~25층 | 40  | 376,0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800,000 | 75,000,000 |
|           |      | 26~29층 | 16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8,700,000 | 75,000,000 |
|           |      | 1~5층   | 20  | 367,0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5,100,000 | 75,000,000 |
|           |      | 6~10층  | 20  | 370,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6,000,000 | 75,000,000 |
| 084.9100D | 84D  | 11~15층 | 20  | 373,0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6,900,000 | 75,000,000 |
|           |      | 16~20층 | 20  | 376,0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800,000 | 75,000,000 |
|           |      | 21~25층 | 15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8,700,000 | 75,000,000 |
|           |      | 1~5층   | 15  | 364,0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4,200,000 | 75,000,000 |
|           |      | 6~10층  | 15  | 367,0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5,100,000 | 75,000,000 |
| 084.9100E | 84E  | 11~15층 | 15  | 370,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6,000,000 | 75,000,000 |
|           |      | 16~20층 | 15  | 373,0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6,900,000 | 75,000,000 |
|           |      | 21~25층 | 10  | 376,0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800,000 | 75,000,000 |
|           |      | 26~29층 | 10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8,700,000 | 75,000,000 |
|           |      | 1~5층   | 10  | 364,0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4,200,000 | 75,000,000 |
| 084.9100E | 84E  | 6~10층  | 10  | 367,0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6,700,000   | 35,100,000 | 75,000,000 |
|           |      | 11~15층 | 10  | 370,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6,000,000 | 75,000,000 |
|           |      | 16~20층 | 10  | 373,0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7,300,000   | 36,900,000 | 75,000,000 |
|           |      | 21~25층 | 10  | 376,0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800,000 | 75,000,000 |
|           |      | 26~29층 | 6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8,700,000 |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하나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세대별 지정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502)

4.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금액

[단위:원]

| 주택형       | 주택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계약 시      | 2023.02.28 | 입주 시      |
| 064.7600A | 64A  | 7,800,000  | 780,000   | 780,000    | 6,240,000 |
| 074.9600A | 74A  | 9,920,000  | 992,000   | 992,000    | 7,936,000 |
| 084.9300A | 84A  | 10,620,000 | 1,062,000 | 1,062,000  | 8,496,000 |
| 084.9300B | 84B  | 10,620,000 | 1,062,000 | 1,062,000  | 8,496,000 |
| 084.9100C | 84C  | 8,850,000  | 885,000   | 885,000    | 7,080,000 |
| 084.9100D | 84D  | 8,850,000  | 885,000   | 885,000    | 7,080,000 |
| 084.9100E | 84E  | 8,850,000  | 885,000   | 885,000    | 7,080,000 |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금액 납부 안내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 계약 시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하나은행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중도금 | 공급금액의 10% | 2023.02.28 |                  |      |             |
| 잔금  | 공급금액의 80% | 입주 시       |                  |      |             |

※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502)

###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Ⅷ 기타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지구 및 단지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원)

| 주택타입              | 품목        | 제품 사양                          | 공급금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비고      |  |
|-------------------|-----------|--------------------------------|-----------|--------------|-------------|---------|--|
|                   |           |                                |           | 계약금(계약시)-20% | 잔금(입주시)-80% |         |  |
| 64A               | 현관중문      | 시스템유리도어 1S/D                   | 990,000   | 198,000      | 792,000     |         |  |
|                   | 현관 청정시스템  | 에어샤워기(AS-150) / 에어브러쉬(DSC-300) | 990,000   | 198,000      | 792,000     |         |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 660,000   | 132,000      | 528,000     |         |  |
|                   | 거실바닥      | 고급 포세린타일                       | 748,000   | 149,600      | 598,400     |         |  |
|                   | 불박이장      | 침실1                            | 침실1       | 825,000      | 165,000     | 660,000 |  |
|                   |           | 침실2                            | 침실2       | 770,000      | 154,000     | 616,000 |  |
|                   | 주방특화      | 벽체특화(벽체 엔지니어스톤:LG비아테라)         | 990,000   | 198,000      | 792,000     |         |  |
|                   |           | 전기오븐(HSB-N361B)                | 440,000   | 88,000       | 352,000     |         |  |
|                   |           | 식기세척기8인용(DW50T4065FG)          | 880,000   | 176,000      | 704,000     |         |  |
|                   | 천정형 에어컨   | 거실+안방 (2대)                     | 3,300,000 | 660,000      | 2,640,000   |         |  |
| 거실+안방+침실1(3대)     |           | 4,400,000                      | 880,000   | 3,520,000    |             |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4대) |           | 5,830,000                      | 1,166,000 | 4,664,000    |             |         |  |
| 74A               | 현관중문      | 시스템유리도어 1S/D                   | 990,000   | 198,000      | 792,000     |         |  |
|                   | 현관 청정시스템  | 에어샤워기(AS-150) / 에어브러쉬(DSC-300) | 990,000   | 198,000      | 792,000     |         |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 660,000   | 132,000      | 528,000     |         |  |
|                   | 거실바닥      | 고급 포세린타일                       | 858,000   | 171,600      | 686,400     |         |  |
|                   | 불박이장      | 침실1                            | 침실1       | 825,000      | 165,000     | 660,000 |  |
|                   |           | 침실2                            | 침실2       | 880,000      | 176,000     | 704,000 |  |
|                   | 주방특화      | 벽체특화(벽체 엔지니어스톤:LG비아테라)         | 1,067,000 | 213,400      | 853,600     |         |  |
|                   |           | 전기오븐(HSB-N361B)                | 440,000   | 88,000       | 352,000     |         |  |
|                   |           | 식기세척기8인용(DW50T4065FG)          | 880,000   | 176,000      | 704,000     |         |  |
|                   | 천정형 에어컨   | 거실+안방 (2대)                     | 3,300,000 | 660,000      | 2,640,000   |         |  |
| 거실+안방+침실1(3대)     |           | 4,400,000                      | 880,000   | 3,520,000    |             |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4대) |           | 5,830,000                      | 1,166,000 | 4,664,000    |             |         |  |

|                       |           |                                |           |           |           |
|-----------------------|-----------|--------------------------------|-----------|-----------|-----------|
| 84A,B                 | 현관중문      | 시스템유리도어 1S/D                   | 990,000   | 198,000   | 792,000   |
|                       | 현관 청정시스템  | 에어샤워기(AS-150) / 에어브러쉬(DSC-300) | 990,000   | 198,000   | 792,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복도우물천정간접조명                  | 990,000   | 198,000   | 792,000   |
|                       | 거실바닥      | 고급 포세린타일                       | 946,000   | 189,200   | 756,800   |
|                       | 불박이장      | 침실1                            | 1,100,000 | 220,000   | 880,000   |
|                       |           | 침실2                            | 880,000   | 176,000   | 704,000   |
|                       | 주방특화      | 벽체특화(벽체 엔지니어스톤:LG비아테라)         | 1,067,000 | 213,400   | 853,600   |
|                       |           | 전기오븐(HSB-N361B)                | 440,000   | 88,000    | 352,000   |
|                       |           | 식기세척기12인용(DW60T8075TE)         | 1,320,000 | 264,000   | 1,056,000 |
|                       | 천정형 에어컨   | 거실+안방 (2대)                     | 3,300,000 | 660,000   | 2,640,000 |
| 거실+안방+침실1(3대)         |           | 4,400,000                      | 880,000   | 3,520,000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4대)     |           | 5,830,000                      | 1,166,000 | 4,664,000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5대) |           | 6,600,000                      | 1,320,000 | 5,280,000 |           |
| 84C,D,E               | 현관중문      | 시스템유리도어 1S/D                   | 990,000   | 198,000   | 792,000   |
|                       | 현관 청정시스템  | 에어샤워기(AS-150) / 에어브러쉬(DSC-300) | 990,000   | 198,000   | 792,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복도우물천정간접조명                  | 990,000   | 198,000   | 792,000   |
|                       | 거실바닥      | 고급 포세린타일                       | 1,045,000 | 209,000   | 836,000   |
|                       | 불박이장      | 침실1                            | 1,100,000 | 220,000   | 880,000   |
|                       |           | 침실2                            | 880,000   | 176,000   | 704,000   |
|                       | 주방특화      | 벽체특화(벽체 엔지니어스톤:LG비아테라)         | 1,320,000 | 264,000   | 1,056,000 |
|                       |           | 전기오븐(HSB-N361B)                | 440,000   | 88,000    | 352,000   |
|                       |           | 식기세척기12인용(DW60T8075TE)         | 1,320,000 | 264,000   | 1,056,000 |
|                       | 천정형 에어컨   | 거실+안방 (2대)                     | 3,300,000 | 660,000   | 2,640,000 |
| 거실+안방+침실1(3대)         |           | 4,400,000                      | 880,000   | 3,520,000 |           |
| 거실+안방+침실1+침실2(4대)     |           | 5,830,000                      | 1,166,000 | 4,664,000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의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불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빌트인가전, 불박이가구류, 현관중문 등의 판매가격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위의 금액과 옵션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방가구 옵션, 불박이가구 옵션,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가구계획 및 공간 등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벽체 마감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거실바닥 포세리타일 옵션 선택 시 마루 등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는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별도의 줄눈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거실바닥 포세리타일 옵션 선택 시 타일의 패턴 및 줄눈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방 벽체특화 옵션 미선택 시 벽타일이 시공됩니다.
- ※ 주방 빌트인가전(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형 주방가구가 마감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에어컨은 모델하우스용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실제 공사시 냉방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 하나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502)

##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 육실문틀 하부 실,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
| ② 바닥   |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③ 벽    |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시멘트벽돌,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동림, 무선AP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타입 | 64A        | 74A        | 84A        | 84B        | 84C        | 84D        | 84E        |
|----|------------|------------|------------|------------|------------|------------|------------|
| 금액 | 22,146,970 | 25,975,440 | 29,329,440 | 29,290,740 | 28,866,490 | 29,321,700 | 29,316,540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칠,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앞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앞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 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영종국제도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5.27)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 우선 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올림 하여 처리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경우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5.27)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공고일 현재 위 우선공급 기간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경우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1.06.17)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5조)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주택으로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 할 예정입니다.

####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r> <td></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td>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 건축물 종류 |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건축물 종류   |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             |        |             |     |                    |               |      |                                  |  |    |                 |  |     |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 120% 이하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7,393,648 ~ 9,611,741  | 7,778,024 ~ 10,111,430 | 8,162,400 ~ 10,611,119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 ~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7,393,648 ~ 8,872,376  | 7,778,024 ~ 9,333,628  | 8,162,400 ~ 9,794,879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7,393,648 ~ 9,611,741  | 7,778,024 ~ 10,111,430 | 8,162,400 ~ 10,611,11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 8,442,224 | 8,513,047 ~ 9,931,887 | 8,513,047 ~ 9,931,887 | 8,872,377 ~ 10,351,106 | 9,333,629 ~ 10,889,232 | 9,797,880 ~ 11,427,35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됩니다.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
|---------------|---|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br>※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포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포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
| <b>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b> |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br>※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br>※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br>- 공급신청자의 <b>직계존속</b>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b>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b>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b> |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호헌처 호헌대상자 보상급여 및 호헌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구 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br>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br>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br>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br>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br>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국세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  |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      | 해당기관                     |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
|------------|--------------------------|--|
| 국가유공자 등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필요 없음<br><br>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과(인천,서울,경기)         |  |
| 철거민        |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
| 10년이상 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
| 의사상자 등     | 인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  |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인천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
| 우수기능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역본부) 국제기능경기부 |  |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  |  |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6.07)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5.27)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이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br>배점 | 배점 기준          |    | 비 고   |
|------------------------|---------|----------------|----|---|
|                        |         | 기 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br>(1)         | 40      |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br>(2)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br>(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br>기 간<br>(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br>거주 기간<br>(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br>*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 저축<br>가입 기간<br>(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됩니다.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항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br>7,839,208 | 7,094,206 ~<br>9,222,467 | 7,094,206 ~<br>9,222,467 | 7,393,648 ~<br>9,611,741 | 7,778,024 ~<br>10,111,430 | 8,162,400 ~<br>10,611,11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 ~<br>7,236,192 | 7,094,206 ~<br>8,513,046 | 7,094,206 ~<br>8,513,046 | 7,393,648 ~<br>8,872,376  | 7,778,024 ~<br>9,333,628  | 8,162,400 ~<br>9,794,879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br>7,839,208 | 7,094,206 ~<br>9,222,467 | 7,094,206 ~<br>9,222,467 | 7,393,648 ~<br>9,611,741  | 7,778,024 ~<br>10,111,430 | 8,162,400 ~<br>10,611,11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br>8,442,224 | 8,513,047 ~<br>9,931,887 | 8,513,047 ~<br>9,931,887 | 8,872,377 ~<br>10,351,106 | 9,333,629 ~<br>10,889,232 | 9,797,880 ~<br>11,427,35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됩니다.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
|------------|--|
| <b>1순위</b>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b>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b><br>※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br>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b>한부모 가족</b> |
| <b>2순위</b> | ① <b>예비신혼부부</b><br>② <b>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b>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70%)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일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일반공급 대상자(30%)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 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 항 목 |                             | 기 준  | 비 고   |
|-----|-----------------------------|--|---|
| 가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
| 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점<br>2명 : 2점<br>1명 : 1점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br>연속 거주기간(인천광역시) | 3년 이상 : 3점<br>1년 이상 3년 미만 : 2점<br>1년 미만 :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br>※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br>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br>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br>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 마   | 혼인 기간<br>(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점<br>3년 초과 5년 이하 : 2점<br>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
|     | 자녀의 나이<br>(한부모 가족에 한함)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br>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br>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br>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 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 시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그 외 수도권) →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 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
|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br>-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br>- 세대주이신 분<br>-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
| 2순위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 여부는 “표.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신청자 본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조회기준일 입력(2021.05.27) →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6.17)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영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3. 거주 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4.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p><b>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b></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br/>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br/>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p> <p>※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
| 신청방법 |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br/>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br/>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

##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천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 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천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천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시책으로 예비입주자 비율이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 300%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된 예비입주자로 인하여 사전서류접수 기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만 인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기준’의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 2021.06.07<br>(청약 Home : 08:00~17:30) | - 인터넷 청약신청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br>- PC : www.applyhome.co.kr /<br>-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b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건본주택 : 10:00~14:00) |
|       | • 1순위                                   | 2021.06.08<br>(08:00~17:30)           | - 인터넷 청약신청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 일반공급  | • 2순위                                   | 2021.06.09<br>(08:00~17:30)           |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관련하여 각 은행별 영업시간이 상이함으로 개별적으로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 . 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VI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시간 : 08:00 ~ 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 (건본주택,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관련하여 각 은행별 영업시간이 상이함으로 개별적으로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건본주택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 구 분                            |            | 구비사항  |
|--------------------------------|------------|---|
| 본인 신청 시                        |            |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br>·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br>- 청약자의 인감도장<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본인서명 확인 방식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구 분            | 구비사항  |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b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 서류제출(예비입주자)                                  | 계약체결(당첨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
|---|--|--|--|---|
| 2021.06.17.(목) 08:00<br>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br>(www.applyhome.co.kr) | 2021.06.18.(금)~2021.06.27.(일)<br>10:00~16:00 | 2021.06.29.(화)~2021.07.06.(화)<br>10:00~16:00 | 2021.07.30.(금)~2021.08.03.(화)<br>10:00~16:00 | 추후 일정<br>당사 홈페이지 고지<br>(http://yj-seohan.co.kr)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3)       |  |  |  |   |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에 게재 할 예정 입니다 .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견본주택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yj-seohan.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쏠 은행 청약자)   |
|--------------|------|---|
| 이용 기간        |      | 2021.06.17.(목) ~ 2021.06.26.(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br>-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6.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6.29.(화) ~ 07.06.(화) 일반공급예비입주자 :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r>•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④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br>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      |                |
|    |      |    |      |      |                |

|                        |   | (해당자)           |  |   |   |
|------------------------|---|-----------------|--|---|---|
| 공통서류<br>(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 포함)                       | 배우자 및<br>세대 구성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br>제3자 제공동의서<br>(소득 및 자산 조회용) | 본인 및<br>세대 구성원  | <p>※ <b>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b><br/>(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li> <li>•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
|                        | ○ |                 |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배우자 및<br>세대 구성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li> <li>•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li> </ul>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br>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⑥ 재직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                        |   | ○               | ⑦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li> </ul> |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피양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br>(또는 배우자)  | <p>※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li> </ul>   |
|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④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li> </ul>  |



|               |  |   |                               |                 |   |
|---------------|--|---|-------------------------------|-----------------|---|
|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피부양<br>직계존속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br>•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br>※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br>(예비)배우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               |  | ○ | ④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⑥ 임신증명<br>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
|               |  | ○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               |  | ○ | ⑧ 예비신혼부부 계약자 확인서              | 본인              |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br>※ 건본주택 비치  |
|               |  | ○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br>자 제공 동의서 | 예비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건본주택 비치)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br>(아래 <표6>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b>과거 1년 이내(전년도)</b><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b>(과거 1년 이내)</b>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br>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br>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구분                    | 계약서류   |
|-----------------------|--|
| 본인<br>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
|                       |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홈페이지(http://yj-seohan.co.kr) 게시 예정]<br>※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
|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제3자<br>대리계약 시<br>추가서류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만 인정)  |

###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와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 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계획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p>공통</p> | <p>일반사항</p> | <p>※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p> <p>※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견본주택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p> <p>※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p> <p>※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의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상1층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급배기팬 및 유인팬이 설치되며, 일부 팬은 벽체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나 열교환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p> <p>※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p> <p>※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p>※단지 배치 상 자연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p> <p>※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p>※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타입에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p> <p>※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주민공동시설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의 동의서 수령후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유치할 수 도 있습니다.</p> <p>※본 지구 내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p> <p>※본 단지 내부에 통신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통신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p> <p>※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p> <p>※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재연구역으로 재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 창호사이즈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p> <p>※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단지내에는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녹조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p> <p>※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p> <p>※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세대창고 및 다목적 창고는 AS사무실로 일부 기간 운영됩니다.</p> <p>※아파트 공용부위 (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합니다.</p> <p>※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일부 세대는 블록 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블록 보행 출입구를 통하여 블록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p> <p>※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된 주택형 및 주택타입과 사업승인 도면 상 주택형의 표기가 다르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홍보물               |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서도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p>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 <p>※주변단지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완충녹지, 근린공원(박석공원), 등산로 등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시공시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전 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p> <p>※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제연의 급기용 D/A, 자연채광을 위한 Top Light(천창) 등은 본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차로 및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동등, 전구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p> <p>※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소방 발전기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가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남동측, 북서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101~102동 사이로 근린공원 보행동선을 연결할 예정으로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 학교                | <p>※초등학교는 인천하늘초를, 중학교는 9학교군(인천중산중, 인천하늘중, 영종중)내 분산 배치 가능하고, 신설학교의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영종국제도시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추후 반드시 재협의가 필요하고 재협의 시 동 요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학교 및 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단지                | <p>※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Top Light(천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                                       | <p>※아파트 옥탑 및 지붕, 측벽면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모듈구성방식, 위치변경 및 수량 추가 포함),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판넬은 106,107,108,109동에 설치 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동) 및 모듈 구성, 모듈 TYPE, 모듈 설치 위치(꼭 및 높낮이 포함), 모듈 수량, 모듈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외부색채, 입면(줄눈 및 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p> <p>※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p> <p>※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자연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사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101동, 108동 저층부 세대는 실외기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바랍니다.</p> <p>※주동 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한 103동, 107동 저층부 세대는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바랍니다.</p> <p>※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의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샤워실,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108동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로 인한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108동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 및 아파트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2동과 104동 사이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및 홍보물은 참고용으로써 식재, 조경시설 및 단지로의 통행로는 변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p> <p>※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8동과 109동 사이 외부공간에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며, 주변에 어린이 승하차 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주동하부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외부 공용부분으로써, 개인 세대의 점유 및 사용이 불가하며, 관리를 위한 점검사다리 설치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 관리직원 등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3개층마다 1개소와 최상층만 개폐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 되는 창호는 1개 층마다 1개소씩 개폐가 가능하며, 개폐가능한 창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p> <p>※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p> <p>※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p> <p>※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옥상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p>단지계획<br/>(설계,<br/>디자인,<br/>마감)</p> | <p>※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및 상가,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BI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쓰레기 보관소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단지 내, 각종시설물(문주, D.A.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옥벽,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실외기 등)이 신설, 위치 이동, 형태 및 높이, 재질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시야차단,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어 승강기, 계단,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합니다.</p> <p>※옥탑 등 부속물 시설의 형태 및 개구부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의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p> <p>※본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입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 적용 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주차차단기 설치 위치 및 입/출차 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위치 변경, 입/출차 수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

|                   |  |
|-------------------|--|
|                   | <p>방법감지기는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p> <p>※측면 및 옥탑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102동, 104동, 107동 지하2층 헬룸실 및 101동, 104동, 106동, 109동 옥상층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101동, 104동, 106동, 109동 옥상에는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p> <p>※쓰레기집적소는 실 시공시 위치 및 사이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이 설치되며 실 시공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영종지구는 자동크린넷 설치 의무로 계획되어 있으나, 입주 시 자동크린넷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자동크린넷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 시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미관저해,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자동크린넷을 통하여 수거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이며, 자동크린넷으로 수거하지 않는 불연 및 재활용쓰레기 등은 기존의 수거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p> <p>※자동크린넷은 각 위치별 쓰레기투입구 용량 및 관경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동별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계획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자동크린넷을 통해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투입구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고여 냄새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미관상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
| <p>공용시설</p>       | <p>※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일부 시설은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시설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내부 마감재 및 구조, 디자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시설은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커뮤니티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p> <p>※아파트 옥탑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철골구조와 건식벽체를 이용한 공법(프리패브 모듈러)으로 시공 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예정입니다.</p> <p>※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p>   |
|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 <p>※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p> <p>※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옥상에 주방 렌지후드용 공용 배기팬이 설치되며 근접 세대는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함은 102동, 103동, 104동, 107동, 108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동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설치 위치는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료, 유지관리 등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
| <p>주차장</p>        | <p>※지하주차장 진입 및 차로의 높이는 2.7M(지하2층 일부 구간 2.3M)이며,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구획의 최소 높이는 2.1M이므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개조한 차량의 높이가 주차구획 최소높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파손등의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p> <p>※단지 레벨 여건상 지하1층 주차장에 면하지 않는 101동, 102동, 108동, 109동은 지하1층 주차장으로의 직접 출입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동별 주차 배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출입동선 길이 등)</p> <p>※지하주차장 내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2.7m 이하)하나, 동별로 진입구간이 상이하오니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102동, 108동, 109동 이용 시 주출입구를 통하여 지하2층 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하며,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이용 시 부출입구를 통하여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p> <p>※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2개소(급속3대, 완속 9대)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기계/전기설 등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출구는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지하주차장과 지하EV홀과 단차에 의해 경사램프로 이동할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선 표기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p> |

|                  |    |   |
|------------------|----|---|
|                  |    | <p>없습니다.</p> <p>※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정공간에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안내되었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이 상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사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지하층에는 세대 창고가 있으며, 동별 개수 및 위치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p> <p>※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차입구를 일부 같이 사용합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으므로 MD계획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은 별도 구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증기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차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기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p>             |
| 단<br>위<br>세<br>대 | 평면 | <p>※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본 단지는 세대 내부에 기본적으로 하향식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각 세대 실외기실 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합니다.</p> <p>※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한 피난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p> <p>※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p> <p>※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걸림과 무관합니다.</p> <p>※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샤시장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p> <p>※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 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본 공사 시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목창호 경첩 등 하드웨어의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마감자재 내용은 형벌,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p> <p>※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설치된 스위치, 콘센트류 제품과 월패드는 성능 개선을 위해 디자인, 기능, UI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통합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홀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구조를 확인 후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비배관 및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시공사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공사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 미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 미선택 시 거실, 안방만 기본으로 슬리브 또는 냉매매립배관이 제공되며, 침실1,2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 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위세대 외부 창호(샷시)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시 사용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단위세대 커튼박스 형태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 및 세대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은 실외기실 내 설치되며, 층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하향식피난구 설치위치에 따른 위치 확인필요)

※현관바닥(창고),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주방후드의 작동시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전사용 조명,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판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상판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상판 후면의 턱 높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배선기구, 월패드 등의 수량 및 사양, 위치, 디자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류는 평면 타입별로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혹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탁기는 보조주방 출입문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CG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CG이미지는 참조용으로 실제 마감 색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2구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 되며, 설치 되는 수량, 위치는 시공중 변동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변동 가능합니다.

※세대 내 적용된 등기구 배치, 수량, 타입에 따라 조도량[x]은 변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절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시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시 샷시창은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창호 제외),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성능(TDR값 제외)은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정 노출형 타입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천정고가 낮아 질수 있고, 천정속 공간이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          |  |   |
|----------|--|---|
|          |  | <p>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p> <p>※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1 또는 침실2에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나 크기 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디자인과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실내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커버가 돌출됩니다.</p> <p>※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 12. 2 개정 시행).</p> <p>※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p> <p>※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p> <p>※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p> <p>※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으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p> <p>※발코니 미확장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선풍통 또는 배수구는 견본주택의 시공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p> <p>※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의 협소 및 세대 높이가 축소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비확장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발코니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물사용이 불가능합니다.</p> <p>※우물천장의 크기와 길이는 주택형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p> <p>※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형태·나누기·고정방식·색상·두께 및 재질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풍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p> <p>※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 골조 내 매립냉매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가구 및 마감재 |  | <p>※불박이장류 부분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거실아트월은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p>   |

|    |   |
|----|---|
|    | <p>※발코니/욕실/현관 등 바닥단차 부위 시공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걸림과 무방합니다.</p> <p>※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에 설치되는 세탁 선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하향식 대피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방향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조명 기구는 신규 디자인 개발제품으로 제품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가구는 본 공사의 시공성을 감안하여, 마감부재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목재도어(침실 및 욕실),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 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세대 내 목재도어의 하드웨어(경첩,손잡이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상판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상판 후면의 턱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 소재, 시공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주택형별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구조가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 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해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p> <p>※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p> <p>※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시스템 선반)도 주택형별로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p> <p>※인조대리석, 타일, 벽 판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 박스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기기의 전화 기능이 제한됩니다.</p> <p>※스위치와 월패드는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 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본 공사 시 불박이장 가구 옵션 상품으로 인해 창호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p> |
| 기타 | <p>※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p> <p>※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2020년 2월 21일 이후 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p> <p>-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p> <p>-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p> <p>-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p> <p>-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p> <p>※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

|             |  |  |
|-------------|--|--|
|             |  |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 공동주택 인근 타 공급예정 공동주택은 없으나 개발 현황에 따라 입주시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음.</p> <p>※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p> <p>※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p> <p>※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p> <p>※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블록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p> <p>※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p> <p>※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블록별 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상품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상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KT의 AI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임.</p> <p>※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의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의 IoT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p> <p>※(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KT AI APT 서비스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p> <p>※AI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kt 의 서비스이용 약관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p> <p>※IoT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KT의 사업 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KT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시설의 지중인입구간일 경우 단지 내 조정부위에 전용 개폐기가 설치 되어 질 수 있으며,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
| <p>견본주택</p> |  | <p>※주택전시관은 64A, 84A(B), 84C(D,E)타입으로 시공되었으니, 이형타입이나 미건립 타입은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나 위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p> <p>※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p> <p>※견본주택,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자연환기구 등)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상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상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p> <p>※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p> <p>※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p> <p>※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가구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p> <p>※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p> <p>※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 소방시설임)</p>  |

|  |   |
|--|---|
|  | <p>※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홍보물 및 건본주택 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시 개별적인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건본주택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위세대 평면도 및 CG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CG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면,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에 설치 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건본주택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p> <p>※침실 벽체 세대 분전반 및 전열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 바랍니다.</p> <p>※주방가구장 내부의 콘센트의 위치, 수량,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스위치, 배선기구,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재는 자체특성상 본 공사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p> <p>※건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공사시 조도개선 및 자체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p> |
|--|---|

####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구 분           | 적용 여부 |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절수설비          | 적용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천원)

| 구 분         | 항 목    | 금액         |
|-------------|--------|------------|
| 택<br>지<br>비 | 택지공급가격 | 93,774,144 |
|             | 기간이자   | 1,185,782  |
|             | 필요적 경비 | 94,383     |

|             |             |           |              |            |
|-------------|-------------|-----------|--------------|------------|
| 건<br>축<br>비 | 공<br>사<br>비 | 그밖의비용     |              | 5,885,497  |
|             |             | 토목        | 토공사          | 3,146,716  |
|             |             |           | 흙막이 공사       | -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           | 옹벽공사         | 148,119    |
|             |             |           | 석축공사         | 18,501     |
|             |             |           | 우수·오수공사      | 111,005    |
|             |             |           | 공동구공사        | -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55,502     |
|             |             |           | 도로포장공사       | 425,744    |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314,626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           | 조경공사         | 3,516,958  |
|             |             |           | 부대시설공사       | 647,867    |
|             |             |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             |             | 가시설물공사    |              | 2,036,104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 1,832,482  |
|             |             | 철골공사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46,645,267 |
|             |             | 용접공사      |              | -          |
|             |             | 조적공사      |              | 2,869,091  |
|             |             | 미장공사      |              | 3,498,344  |
|             |             | 단열공사      |              | 1,813,981  |
|             |             | 방수·방습공사   |              | 1,758,479  |
|             |             | 목공사       |              | 3,701,966  |
|             |             | 가구공사      |              | 3,146,716  |
|             |             | 금속공사      |              | 1,554,857  |
|             |             | 지붕 및 흙통공사 |              | 980,994    |
|             |             | 창호공사      |              | 4,812,578  |
|             |             | 유리공사      |              | 1,480,854  |
|             |             | 타일공사      |              | 2,646,969  |
|             |             | 돌공사       |              | 3,516,958  |
| 도장공사        | 1,573,358   |           |              |            |
| 도배공사        | 2,498,850   |           |              |            |
| 수장공사        | 2,128,608   |           |              |            |
| 주방용구공사      | 3,017,098   |           |              |            |
| 그 밖의 건축공사   | 1,665,862   |           |              |            |
| 기계          | 급수설비공사      | 1,721,477 |              |            |

|        |  |         |              |            |
|--------|--|---------|--------------|------------|
|        |  |         | 급탕설비공사       | 1,036,609  |
|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1,591,859  |
|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1,351,236  |
|        |  |         | 난방설비공사       | 1,702,977  |
|        |  |         | 가스설비공사       | 555,250    |
|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222,122    |
|        |  |         | 특수설비공사       | 2,036,104  |
|        |  |         | 공조설비공사       |            |
|        |  | 그밖의공종   | 전기설비공사       | 20,046,412 |
|        |  |         | 정보통신공사       | 15,067,213 |
|        |  |         | 소방설비공사       | 13,697,477 |
|        |  |         | 승강기공사        | 2,221,225  |
|        |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5,553,062  |
|        |  |         | 이윤           | 12,957,005 |
|        |  | 간접비     | 설계비          | 3,639,584  |
|        |  |         | 감리비          | 1,340,899  |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2,586,660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1,440,405  |
|        |  |         | 보상비          | -          |
|        |  |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6,125,460  |
| 그밖의 비용 |  |         | 22,776,479   |            |
| 합계     |  |         | 322,395,000  |            |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가.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나.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98,360,328    | 98,360,328     | 98,360,328     |

6.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택지비 가산비     |             |             |                     |                                    |           | 건축비 가산비            |                |              |             |            |             |                    |                      |                     |               |               |            |
|-------------|-------------|-------------|---------------------|------------------------------------|-----------|--------------------|----------------|--------------|-------------|------------|-------------|--------------------|----------------------|---------------------|---------------|---------------|------------|
| 택지비<br>기간이자 | 말뚝박기<br>공사비 | 암석지반<br>공사비 | 흙막이<br>및 차수벽<br>공사비 | 기타증빙<br>가능한<br>비용<br>(감정평가<br>수수료) | 소계        | 초과복리<br>시설<br>설치비용 | 인텔리전트<br>설비공사비 |              |             |            |             | 친환경<br>주택건설<br>가산비 | 지하주차장<br>충고증가<br>공사비 | 법령개정때 따른<br>추가건설가산비 |               | 사업승인조건<br>공사비 | 소계         |
|             |             |             |                     |                                    |           |                    | 홈<br>네트워크      | 초고속<br>통신특등급 | 에어콘<br>냉매배관 | 기계환기<br>설비 | 쓰레기<br>이송설비 |                    |                      | 건강친화형<br>주택         | 전기자동차<br>충전시설 |               |            |
| 1,233,305   | -           | 1,360,600   | 4,760,770           | 98,166                             | 7,452,840 | 2,099,270          | 4,351,052      | 2,708,242    | 2,119,994   | 4,085,003  | 1,160,235   | 874,335            | 1,438,862            | 2,351,301           | 183,825       | 2,317,175     | 23,689,2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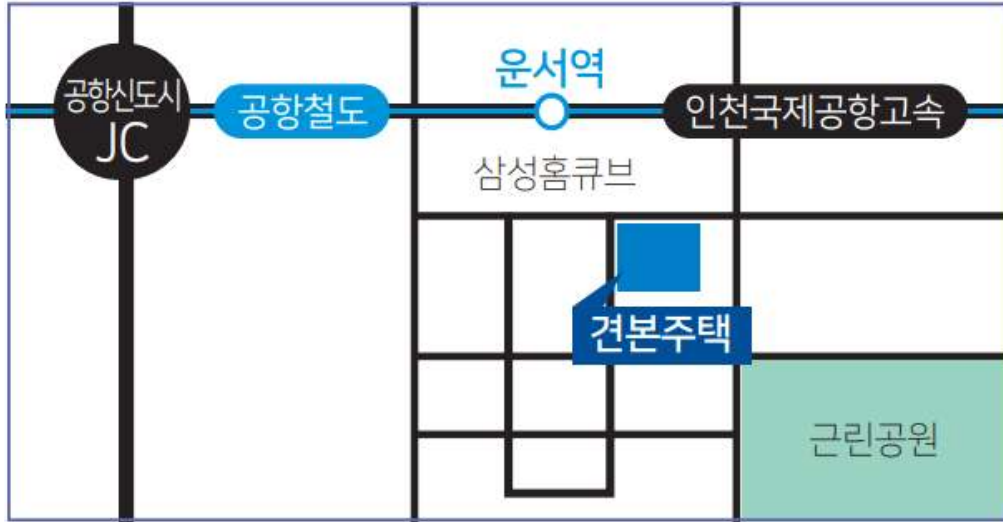
##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인천영종 A-42BL | <b>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b><br>(주) 서한 (502-81-16195)<br>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503-81-25270) | (주)서한 (502-81-16195)<br>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503-81-25270)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214-81-15867)<br>(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br>(주)바탕건축사사무소 (215-87-87916)<br>대평엔지니어링(주) (219-81-29615)<br>(주)전기엔지니어링 (120-81-60091) |

## 8.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견본주택



- 위치안내 : 인천 중구 운서동 3087-3
-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 10:00~18:00

홈페이지

<http://yj-seohan.co.kr/>

분양문의

032-751-8800